의정활동보고서

제297회 임시회(2018. 1. 29 ~ 2. 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맹과 충성,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황금 개띠의 해인 2018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뜬하게 성취하시고 우리 지역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격동의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3백만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을 지켜주시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신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등 나라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혁의 시기를 맞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경북 발전의 백년대계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맡은 직무 수행에 더한층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서민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청년과 서민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금융과 세제, 경영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안전입니다.

더 이상 인재(人災)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자율적 현장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간 입체적이고 촘촘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확실히 주장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과 환동해 신해양시대의 개막, 지역 균형발전 등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새해 업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회,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2018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2018년 새해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차 례

Ⅰ. 개 황 ····· 9

Ⅱ. 의사일정 ····· 10

Ⅲ. 의안처리 ····· 16

Ⅳ. 민원처리 ····· 17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9

Ⅵ. 5분 자유발언 ····· 23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23

□ 황이주 의원(농수산위원회) ····· 26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 30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33

□ 김인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6

부 록

□ 조 례 안(7건) ····· 41

□ 동 의 안(3건) ····· 70

□ 결 의 안(1건) ····· 78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29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9일까지 12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10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7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9일(월)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4분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교육위원장 선거의 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의 선임인사 후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금) 11시에 개의하여 한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명의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위원회 인사검증 경과보고』를 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도민에게 힘이 되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회,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298회 임시회로 2018년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7년 1월 29일 ~ 2월 9일(12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72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7	1	2	2	1	1	1	2	-	7
누 계	383	31	47	49	40	36	38	42	60	40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9(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황이주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안건처리 ○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교육위원장 선거의 건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 교육위원회 위원장(조현일)·부위원장(김지식) 인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2. 9(금) 11:1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김인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건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9(금) 11:10 (제2차)	○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9(월) 16:20 (제1차)	▢ 안건처리 ○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수) 15:2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2. 8(목) 14:3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9(월) 16:2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 30(화) 10:4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30(화) 13:3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재)문화엑스포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30(화) 11:3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30(화) 14:10 (제1차)	▢ 안건처리 ○ 업무보고의 건(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9(월) 16:00 (제1차)	▢ 안건처리 · 위원장(조현일) 인사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지식) 인사	
1. 30(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9(금) 13:0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9(금) 10:10 (제1차)	▢ 안건처리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31(수) 10: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수) 10: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2. 8(목) 17:3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9(월) 11:00 (제3차)	▢ 안건처리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9(금) 10:00 (제1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공항추진기획단 소관)	

Ⅲ. 의안처리

※ ( )안은 제10대(제271회~제297회) 의회 누계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중 ©	비고
				계 ⓐ	가결		부결	폐안			
					원안	수정					
계		16 (827)	16 (817)	16 (808)	15 (737)	1 (68)	0 (3)	0 (0)	0 (9)	0 (10)	
조례안	소 계	7 (523)	7 (515)	7 (508)	7 (465)	0 (40)	0 (3)	0 (0)	0 (7)	0 (8)	
	의회 제안	6 (302)	6 (295)	6 (289)	6 (275)	(14)			(6)	(7)	
	도지사 제출	1 (153)	1 (153)	1 (152)	1 (133)	(19)			(1)		
	교육감 제출	0 (68)	0 (67)	0 (67)	(57)	(7)	(3)		(0)	(1)	
규칙안		0 (6)	0 (6)	0 (6)	(6)					(0)	
예산·결산		0 (35)	0 (35)	0 (35)	(20)	(15)					
동의·승인		3 (78)	3 (76)	3 (76)	2 (63)	1 (13)				(2)	
건의안		0 (2)	0 (2)	0 (2)	(2)						
결의안		3 (109)	3 (109)	3 (109)	3 (109)						
기타안		3 (74)	3 (74)	3 (72)	3 (72)				(2)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 원 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102)	1 (43)	1 (11)	(2)	1 (24)	(6)	(7)	(4)	(2)	(3)
의 회 운 영	(2)	(2)								
기 획 경 제	(8)	(3)					(5)			
행 정 보건복지	1 (19)	1 (13)	(4)		(1)		(1)			
문 화 환 경	1 (14)	(5)	1 (7)					(2)		
농 수 산	(6)	(3)					(1)		(2)	
건 설 소 방	1 (40)	(11)		(2)	1 (23)			(2)		(2)
교 육	(12)	(5)				(6)				(1)
특 별 위 원 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99)	(98)	(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8)	(8)				
행 정 보건복지	(18)	(18)				1
문화환경	(13)	(13)				1
농 수 산	(6)	(6)				
건설소방	(39)	(38)	(1)			1
교 육	(12)	(12)				
특별위원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6건(조례안 7, 예산안 3, 결의안 3, 기타안 3)

2. 처리 의안 : 16건

○ 가결 의안 : 16건(조례안 7, 동의안 3, 결의안 3, 기타안 3)

○ 미처리(보류) 의안 : 해당없음

3. 의안접수 내용

○ 조례안 : 접수 7건, 처리 7건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18. 1. 29	의회운영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8. 1. 18	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한혜련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	박권현 의원 외 14명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	이영식 의원 외 14명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김명호 의원 외 34명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	김지식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의안 : 3건

연번	접 수 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8. 1. 18	도 지 사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2	〃	〃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 결의안 : 3건

연번	접 수 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8. 1. 29	의 장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	〃	휴회의 건	
3	'18. 2. 9	의회운영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기타안 : 3건

연번	접 수 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8. 1. 29	의 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	〃	교육위원장 선거의 건	
3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4.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 : 7건

연번	이 송 일	이 송 처	안 건 명	공포일
1	'18. 2. 12	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 26 (제4055호)
2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56호)
3	〃	〃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4057호)
4	〃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4058호)
5	〃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59호)
6	〃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제4060호)
7	〃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54호)

5. 의원 동정

□ 위원장직 사임

소 속	직 위	성 명	사임일자	비 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 영 석	2018. 1. 25	

□ 수 상

수 상 자	수여기관	일 시	훈 격
정영길 의원	(주)이십일세기뉴스	2017. 12. 22(금)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정계인 대상
이영식 의원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2017. 12. 23(토)	위대한 한국인 대상
장경식 의원	포럼도시와 미래터환경21	2018. 1. 10(수)	자랑스런 환경대상
박문하 의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2018. 1. 17(수)	2017 최우수 의원상
김인중 의원	한국자치학회	2018. 1. 23(화)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우수상'

Ⅵ. 5분 자유발언

□ 2018년 1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 대안 마련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면 무효화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우리 경북도민과 울진군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상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허탈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과 같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 정책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도 무시한 채,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무색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신한울 3, 4호기는 2008년부터 제7차 계획까지 반영되어 계속 유지되어 온 건설사업이며, 2017년 발전사업 허가도 취득한 사업으로 법적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해당사자인 울진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여 상처난 경북도민과 군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원자력정책연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춘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전략 수립에만 관심이 있을 뿐 원전지역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전지역 피해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카드로 압박할 대안과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사람중심,

차별 없는 세상', 경북이 다음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차세중추' 정신이 탈원전 정책에 밀려나고 내몰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엄중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법률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면 무효화를 위하여 도 차원의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원전지역 피해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법률적 특단의 조치를 즉각 제시할 것과 원전시설을 위험시설로 법제화하고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의 전면개편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체계를 원전 등 발전원을 보유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셋째,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안전관리시스템 체제 구축과 함께 안전과 관련한 기관의 울진군 유치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1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농수산위원회) ◎

≪ 동해안 어업 분쟁권 관련 ≫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끊임없이 주창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울진 지역경제 붕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울진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아니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경상북도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지난 17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연안대게자망협회 어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생업 현장인 바다에서 조업을 해야 할 어민들이 도청으로 몰려온 이유는 대게 철만 되면 포항을 근거지로 한 560여 척의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들이 영덕, 울진의 대게어장까지 진출해 자망어구를 훼손하는 등 불법조업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망어구는 해역의 중·상층에 그물을 투입해 지나가는 대게를 포획하는 반면, 통발은 주로 저층에 투입해 대게를 잡는 관계로 통발을 건져 올리는 과정에서 자망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또, 통발은 어구 안에 미끼를 넣어 잡는 관계로 암컷 대게의 포획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중한 대게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안자망 대게잡이 어민들의 피해 방지와 대게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자망과 통발 간 조업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게 불법조업의 단속과 처벌 강화, 연안대게자망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경상북도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울진군의 해상 경계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강원도는 삼척 호산항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건설과 운영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운반선 항로지정을 위하여, 강원도와 경북도의 경계인 고포항 남쪽 37도 8분 42초까지 어로금지 수역으로 정해 경북 울진의 고포어촌계 마을·협동양식어장 일부를 소멸 보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상경계는 법률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경계를 설정하는 주체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경북과

강원도는 육상행정경계인 고포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 8분 46초를 해상경계로 해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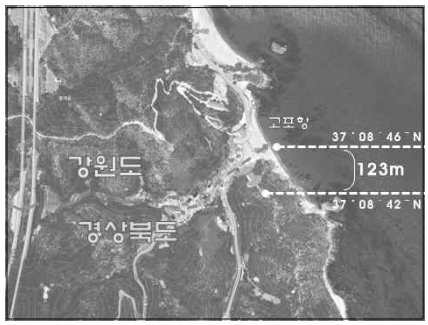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남쪽으로 123m를 더 내려와 경북의 바다가 강원도의 어로금지 수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이 통탄할 일은 사정이 이런데도 경상북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울진군민을 비롯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원도 측에 어로금지 수역 지정을 정정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행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원도 해경까지 이 수역을 그들의 경비구역으로 알고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경북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지역에 조업에 나섰던 울진 죽변항 소속 어선 3척이 최근 강원도 해경에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의한 일방적인 조업금지 수역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멀쩡한 우리의 바다를 강원도에 빼앗긴 꼴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우리 경북도는 동해안권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21세기 해양시대의 선점을 위한다면서 지난 8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서둘러 임시청사를 포항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일방적인 조업금지 수역 지정에 손 놓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해양, 그리고 수산정책, 이로 인해 멀쩡한 우리 바다를 강원도에 빼앗기고, 이를 모르고 조업에 나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리 경북행정,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의 일방적 고시를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잃어버린 123m의 경북의 바다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1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

≪ 포항 지진 후 지진 트라우마센터 설립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여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포항제철소 내 사망사고, 밀양 참사로 숨진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지난 11월 포항에서 지진 발생 이후 연일 여진이 잇따르면서 지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은 여진만 6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11월 포항인덕요양원 화재사건, 2012년 9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 보관창고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주보다 강도는 조금 적었으나 주택 파손 등 시설물 피해는 2만 7,400여 곳에 550여 억원으로 경주의 5배가 넘는 심각한 자연재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까지 연기하였겠습니까?

이렇게 경북도내 여러 곳에서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난 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시설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비록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주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 15개 시·군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사고 등에 따른 치료센터라고 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5개 시·군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는 95명이 있으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도내 전체 30명에 불과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과거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2012년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4년간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

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건립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1,860여 명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연간 3, 4천 명이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아, 아동과 같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대한 심리치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는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다가 성장기에 가서 돌출행동 장애로 나타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피해지역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교사를 활용하는 등 재난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난사고 시 육체적 상처는 치료를 통해 육안으로 그 진척 정도를 볼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장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값진 치료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연거푸 발생한 지진은 자연재해로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재난사고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1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일본의 '독도 영토 · 주권 전시관' 설치 관련 ≫

울릉도 · 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일본정부의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 개관을 규탄하고 경상북도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1월 25일 도쿄역과 국회의사당이 가까운 하비야 공원 내에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을 개설하고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 결정서와 독도 강치 어업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자료전시관을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중앙정부인 내각 관방 영토 · 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독도전시관을 개관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의 폐쇄 요구도 거부하고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루속히 개정되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작년 2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울릉군'의 명칭을 '울릉·독도군'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울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명칭을 울릉군에서 울릉·독도군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역겨운 일본의 두 얼굴을 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뒤로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여 일본의 청소년과 국민, 그리고 외국인에게까지 왜곡된 역사인식을 고착화시키려는 악랄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억지주장에 분개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울릉·독도 군으로의 자치단체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에 한반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는 있고 독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므로 독도가 당당하게 제자리에 표기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많은 국민의 염원을 담은 본 의원의 주장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2월 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인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유휴공공시설 문화관광자원 활용 방안 관련 ≫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에 폐기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공시설을 역사 ·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재활용이 가져다주는 부가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 예전 철도역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도 폐기된 공공건축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도시재생사업을 100대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이미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철도역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공공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무배치 간이역이 39개에 달하고 59개의 미활용 폐교를 비롯한 유휴공공시설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활용이 미흡합니다.

신역사가 건설되고 나면 그만큼 사람의 왕래도 뜸해지고 기존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상권들이 침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경북 최대도시의 기차역이자 시·종착역이었던 구 포항역은 KTX 포항역이 생기면서 모든 업무가 신역사로 옮겨지고 역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구역사는 2015년 10월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경주역이 건설된 이후 경주역사가 그러하고 안동역도 현재 새로 건설 중인 신안동역사가 완공되고 나면 기존의 안동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침체될 우려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에서는 철도역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 직접적인 대안마련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공공시설과 신역사 건설로 인해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역사 활용에 대해 도차원에서 코레일 및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자원, 역사공원 등으로의 활용과 자산임대 등 부대사업 수익창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주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도는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1925년에 준공되었던 옛 서울역사가 지난 2004년 KTX 신역사 준공 뒤 그 기능을 접어야 했지만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철도역과 병원이 미술관으로, 도축장과 쌀 창고가 문화예술 센터로 탈바꿈하여 유료로 운용되는 근대박물관 입장객 수가 2013년에 22만 명에서 2016년에는 10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 재활성화 대표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그저 손 놓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도내 유휴공공시설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근 관광자원을 지역명소로 부각시켜 새로운 관광메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 록

□ 조 례 안(7건) ····· 41

□ 동 의 안(3건) ····· 70

□ 결 의 안(1건) ····· 78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18. 1. 29)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1. 18)

○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혜련 의원 외 11명('18. 1. 18)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권현 의원 외 14명('18. 1. 18)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식 의원 외 14명('18. 1. 18)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명호 의원 외 34명('18. 1. 18)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식 의원 외 10명('18. 1. 18)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웅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를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경제위원회 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3.~4. (생 략) 5. 농수산위원회 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7.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 ---------- 나.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 가. ----------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 6.~7.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웅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

현 행	개 정 안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Drone)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프로그램 된 경로 등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장치와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 공유와 확산, 산업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등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3.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4.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및 교육
5.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6. 국내외 유관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업무

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웅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제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노인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대상) 도지사는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5. (생 략)	**제5조(지원사업 대상)** ---------- ---------- ---------- ---------. 1.~2. (현행과 같음) 3.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 4.~6.(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가. 이산화탄소(CO_2)

   나. 메탄(CH_4)

다. 아산화질소(N_2O)

라. 수소불화탄소(HFC_S)

마. 과불화탄소(PFC_S)

바. 육불화황(SF_6)

3.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감축”이라 함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5. “기후변화 대응”이라 함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내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7.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8. “승용차 요일제”란 도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도민자율운동을 말한다.

9. “친환경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 2 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제6조(지방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이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감축 목표 설정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 수립

③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감축수단 등을 구체화하고 이행성과 점검체계를 포괄하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시에는「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세부이행계획은 경상북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 없는 날) ①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①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운전 확산운동 전개) 도지사는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

제17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지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19조(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경상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경북 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경북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21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민·사업자·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활동, 해외조림·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산출사용료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제16조 관련)

<table>
<tr><td rowspan="2">시 설 명</td><td colspan="3">사 용 료(원)</td><td rowspan="2">비고</td></tr>
<tr><td colspan="2">4시간 까지</td><td>4시간 초과</td></tr>
<tr><td>일 반 교 실</td><td colspan="2">5,000원 이상</td><td>10,000원 이상</td><td rowspan="2">1실당</td></tr>
<tr><td>특 별 교 실</td><td colspan="3">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td></tr>
<tr><td>체육관, 강당</td><td colspan="2">26,000원 이상</td><td>51,000원 이상</td><td></td></tr>
<tr><td>운 동 장</td><td colspan="2">30,000원 이상</td><td>60,000원 이상</td><td>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td></tr>
<tr><td>테 니 스 장</td><td colspan="2">30,000원 이상</td><td>60,000원 이상</td><td></td></tr>
<tr><td rowspan="6">수 영 장</td><td colspan="3">1인당 1회 사용료</td><td rowspan="6"></td></tr>
<tr><td>구분</td><td>개인</td><td>단체</td></tr>
<tr><td>어른(대학생)</td><td>3,000원</td><td>2,500원</td></tr>
<tr><td>청소년 및 군인</td><td>2,000원</td><td>1,500원</td></tr>
<tr><td>어린이 및 노인</td><td>1,500원</td><td>1,000원</td></tr>
<tr><td>영유아</td><td>1,000원</td><td>500원</td></tr>
<tr><td>기 타 사 항</td><td colspan="3">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td><td></td></tr>
</table>

※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출 사용료의 3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16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①·②·③·④ (생 략)

⑤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인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제16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colspan="3">사 용 료(원)</th><th rowspan="2">비고</th></tr>
<tr><th colspan="2">4시간 까지</th><th>4시간 초과</th></tr>
<tr><td>일반교실</td><td colspan="2">5,000원 이상</td><td>10,000원 이상</td><td rowspan="2">1실당</td></tr>
<tr><td>특별교실</td><td colspan="3">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td></tr>
<tr><td>체육관, 강당</td><td colspan="2">30,000원 이상</td><td>60,000원 이상</td><td></td></tr>
<tr><td>운 동 장</td><td colspan="2">30,000원 이상</td><td>60,000원 이상</td><td>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td></tr>
<tr><td>테니스장</td><td colspan="2">30,000원 이상</td><td>60,000원 이상</td><td></td></tr>
<tr><td rowspan="6">수영장</td><td colspan="3">1인당 1회 사용료</td><td rowspan="6"></td></tr>
<tr><td>구 분</td><td>개인</td><td>단체</td></tr>
<tr><td>어른 (대학생)</td><td>3,000원</td><td>2,500원</td></tr>
<tr><td>청소년 및 군인</td><td>2,000원</td><td>1,500원</td></tr>
<tr><td>어린이 및 노인</td><td>1,500원</td><td>1,000원</td></tr>
<tr><td>영유아</td><td>1,000원</td><td>500원</td></tr>
<tr><td>기타사항</td><td colspan="3">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td><td></td></tr>
</table>

</td><td>

제16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①·②·③·④ (현행과 같음)

⑤ 3개월----------.

다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산출사용료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제16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colspan="2">사 용 료(원)</th><th rowspan="2">비고</th></tr>
<tr><th>4시간 까지</th><th>4시간 초과</th></tr>
<tr><td>일반교실</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특별교실</td><td colspan="2">----------</td></tr>
<tr><td>체육관, 강당</td><td>26,000원 이상</td><td>51,000원 이상</td><td></td></tr>
<tr><td>운 동 장</td><td>----------</td><td>----------</td><td>----------</td></tr>
<tr><td>테니스장</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수영장</td><td colspan="2">----------</td><td rowspan="6"></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기타사항</td><td colspan="2">----------</td><td></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출사용료의 3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 (현행과 같음)

〓 동 의 안 〓

○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도지사('18. 1. 18)

○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18. 1. 18)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도지사('18. 1. 18)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웅 규**

2018년 2월 9일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1. 목 적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종전 연면적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에서 제외되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

2. 감면안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면적
2. 대체취득하는 주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면적

3. 기 타

본 감면안은 2017년 11월 15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8년 2월 9일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주요내용

①『경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

- 사 업 비 : 4,300백만원(도비 3,300, 군비 1,000)
  ※ 당초 관리계획 의결('17. 9월) : 3,300백만원(도비 3,300)
- 변경사유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예천군비 반영
- 사업기간 : 2018. 5. ~ 2019. 2.
- 위 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947-1
- 취득재산 : 건물 1동, 건축연면적 1,680㎡
  ※ 당초 : 건축연면적 1,204㎡

②『경북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

- 사 업 비 : 29,000백만원(복권기금 4,792, 특별교부세 1,000, 도비 23,208)
  ※ 당초 관리계획 의결('12. 10월) : 20,000백만원(도비 20,000)
- 변경사유 : 설계공모작(전통양식) 선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미적용된 사항 반영
- 사업기간 : 2012. ~ 2019.
- 위 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5
- 취득재산 : 건물 2동, 건축연면적 7,886㎡
  ※ 당초 : 건축연면적 8,300㎡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건	9,566	33,3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건	9,566	33,3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경북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건은 사업비 산출내용, 추진경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①『경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

- 사 업 비 : 4,300백만원(도비 3,300, 군비 1,000)
  ※ 당초 관리계획 의결('17. 9월) : 3,300백만원(도비 3,300)
- 변경사유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예천군비 반영
- 사업기간 : 2018. 5. ~ 2019. 2.
- 위 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947-1
- 취득재산 : 건물 1동, 건축연면적 1,680㎡
  ※ 당초 : 건축연면적 1,204㎡

②『경북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삭제〉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건	1,680	4,3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1,680	4,3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총괄표(신 · 구 대비)

(단위 : ㎡, 천원)

구 분			원 안(당 초)				원 안(당 초)			
			건수	수 량	금 액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건	9,566	33,300,000		1건	1,680	4,300,000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건	9,566	33,300,000		1건	1,680	4,3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웅 규**

2018년 2월 9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부료 감면

○ 목 적 :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대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정부출연기관)

○ 대부기간 : 20년

○ 대부방법 : 무상

○ 대부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공 시기	소 재 지	부 지	건 축 연면적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18. 3.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경산지식산업지구	112,582㎡	18,670㎡

〓 결 의 안 〓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18. 2. 9)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웅 규**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8. 3. 22(목) 13:40
- 2018. 3. 23(금) 14:00
- 2018. 4. 5(목) 11:00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